

##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18년 01월 01일, 개정 2018년 05월 01일, 개정 2020년 01월 01일  
개정 2020년 03월 01일, 개정 2020년 05월 01일

소관부서 : 교무처 학사관리팀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학칙 제28조에 정한 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융합전공은 우리대학 또는 우리대학과 타 대학 간에 둘 이상의 학과(전공)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을 구성하는 전공과정이다.

**제3조(융합전공 개설)** ① 융합전공은 미래사회 수요분야 대비를 위한 융·복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.

② 융합전공은 둘 이상의 학과(전공)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을 구성하여야 하나, 하나의 학과(전공)가 사회의 수요에 따른 새로운 분야를 접목하거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 개발에 관련된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.

③ 융합전공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

**제4조(교육과정 운영)** ①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관학과를 지정하여야 하며, 융합전공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**제5조(신청자격)**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최초 2개 학기를 등록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,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당해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.1., 2020.3.1.>

**제6조(신청시기 및 절차)** ① 매 학기 시작 전 소정의 기간에 융합전공 이수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을 작성하여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과(부)에서는 융합전공 이수신청서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1.>

③ 교무처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이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융합전공 개설 여부를 결정하고 주관 학과(부)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1.>

**제7조(신청자에 대한 지도)** 융합전공이수 대상자의 융합전공 교과목에 대한 수강 지도는 융합전공 주관학과(부)에서 한다.

**제8조(이수교과목 및 학점)** ① 학위취득을 위한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이수 학점은 복수전공의 학위취득을 위한 이수 학점과 동일하다.

②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

교차인정 범위는 최대 9학점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0.3.1.>

③ 융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제1전공의 멘토링과목을 제외한 전공필수 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. <신설 2018.5.1.>

**제9조(학위수여)** ① 융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위증에 해당 융합전공 학위명을 명기한다.

② 삭제 <2018.5.1.>

③ 융합전공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. 다만, 사전에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수여한다.

**제10조(중도포기)** ① 융합전공 이수자가 중도에 이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기간에 융합전공 이수포기서[별지 제2호 서식]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융합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기 이수한 융합전공과정 중 제1전공의 전공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제1전공 이외의 이수과목이 부전공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. 제1전공 및 부전공 이외의 이수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20.5.1.>

**제11조(기타)** 융합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때에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본 규정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사항은

본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“참된 인성 · 창의성 · 실용성”

## 융합전공 이수신청서

확 인	학과(부)장	학장

소속 : \_\_\_\_\_ 학번: \_\_\_\_\_ 학년: \_\_\_\_\_ 성명:

①

융합전공명	
-------	--

위와 같이 융합전공 이수를 희망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

### 영산대학교 총장 귀하

※ 본 신청서는 작성하여 소속 학과(부)사무실에 제출함

[별지 제2호 서식]

“참된 인성 · 창의성 · 실용성”

## 융합전공 이수포기서

확 인	학과(부)장	학장

소속 : \_\_\_\_\_ 학번: \_\_\_\_\_ 학년: \_\_\_\_\_ 성명:

㉠

융합전공명	
사유	

위와 같이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

### 영산대학교 총장 귀하

※ 본 이수포기서는 작성하여 소속 학과(부)사무실에 제출함